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제 2 판

(2021.7.5.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1판 대비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6월)	조정 (7월~)
밀접접촉	진단검사	(3회) ①접촉자 분류 직후 ②접촉 6~7일차 ③접촉 12-13일차	(1회) ①최종접촉일 기준 6~7일*차 *단,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감시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일 1회 유선 관리)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해외입국	진단검사	(4회) ①입국 72시간 전 ②입국 1일차(보건소) ③입국 6~7일차 ④입국 12~13일차	(2회) ①입국 72시간 전 ②입국 6~7일차(보건소)
	감시체계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일 1회 유선 관리)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일러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이 지침의 내용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내 현황(2021.6월 현재)]

- '21.2.26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실시
[우리나라 도입(예정)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플랫폼	바이러스벡터 백신		mRNA 백신		합성항원
접종횟수	2회	1회	2회	2회	2회
접종간격	8주~12주 (허가 4주~12주)	-	21일	4주	21일
국내허가 제품명 (허가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 ('21.2.10.)	코비드-19 백신얀센주 ('21.4.7.)	코미나티주 ('21.3.5.)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 ('21.5.21.)	-

▶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1 기본원칙 및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예방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미완료자도 여전히 대응지침 등 기존 지침의 규제대상이 되며,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기존 지침 및 수칙 등에 대한 예외나 특례를 인정
- 다만 다른 지침 및 수칙 등에서 예방접종자 및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 이 지침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 및 수칙 등을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예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감염병의심자로 보아 기존 지침 등을 적용

2 정의

- 이 지침에서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3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수동감시 대상이나, 일정 요건(3-2) 미충족 시 자가격리로 전환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유지

- ① 무증상일 것
- ②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 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 ④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3-3. 수동감시 중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①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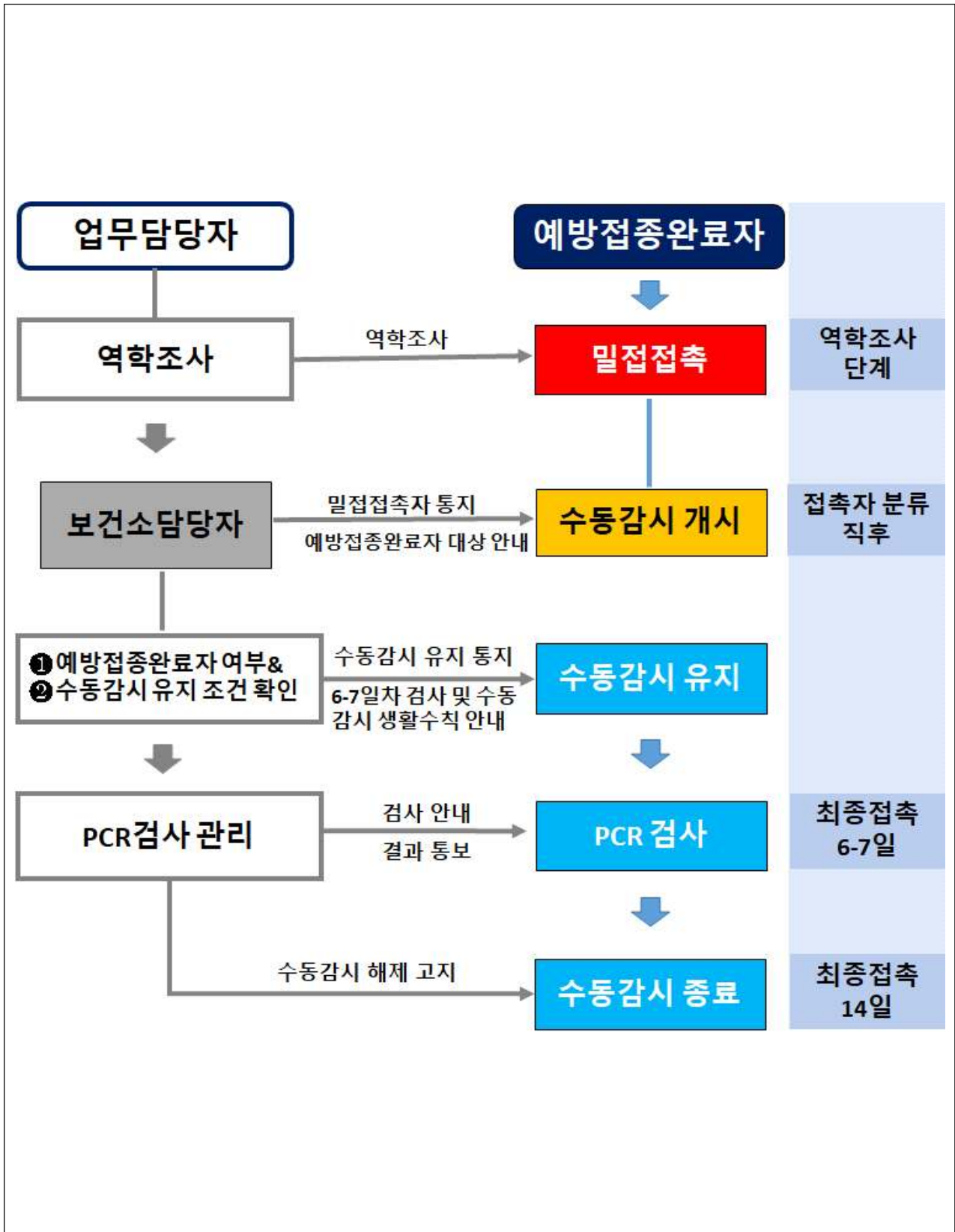
*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업무 처리 개요〉



4 해외입국 관련 사항

4-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기존 검역지침 등에 따라 통상의 입국자와 동일하게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입국 시부터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임. 따라서, 일정 요건(4-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유지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입국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4-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가능, 자가격리 면제 후에는 수동감시 실시

▶ 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① 무증상일 것

②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제외국가)(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4-3. 수동감시 중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① 입국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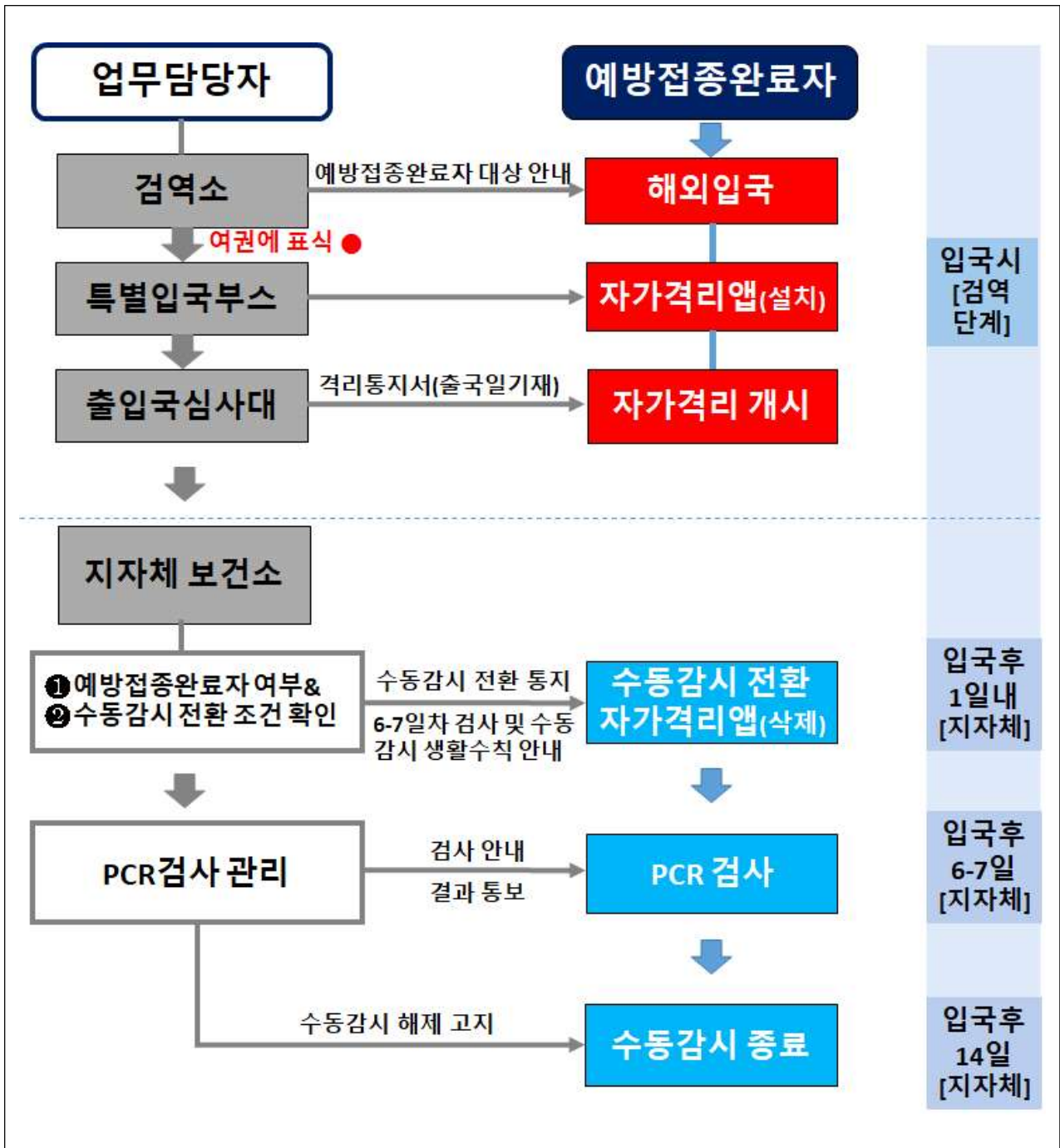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②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해외입국 관련 업무 처리 개요>



5 방역수칙 적용 관련

-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수칙은 예방접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된 지침이나 수칙을 따름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등)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6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 감염취약시설 등의 선제적 검사 완화 관련 사항은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통지·관리(중앙방역 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염취약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증상발생 시 즉시 검사 권고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접촉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I 수동감시 관리 절차

- ①(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②(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유지
 - ※ (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 자가격리 전환
- ③(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접촉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 ④(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II 수동감시 유지 조건▶

-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 ③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 ④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확진자가 아닐 것
- ⑤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

* 밀접접촉자 통지시 함께 통지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출국한 경우)는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소 및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아래 수동감시 전환 조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격리통지서가 유효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위반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건소로 입국자 명단 통보 시까지 평균 1일 내외 소요) ♣**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I 수동감시 관리 절차

[검역단계]

①(입국 직후-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특별입국부스), 격리통지서* 수령(출입국심사대) 후 실거주지 이동(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나, 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추후 보건소에서 출국일 확인 등을 위해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직후-유증상자) 검역소에서 PCR 검사 실시,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

[지자체단계]

②(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전환(자가격리앱 삭제)

※ (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 자가격리 유지

③(수동감시 기간 중) 입국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④(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II 수동감시 전환 조건[▶]

① 해외출국전에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해당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 해외입국시 기타 안내와 함께 통지

붙임 2 |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 ①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②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월 ____일~____월 _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해외입국자용)

-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같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아울러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 ① **입국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②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 ①, ②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_____월 ___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붙임 3

업무담당자의 수동감시 실시 요령

□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

가.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

통상절차 진행	① 밀접접촉자 통지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밀접접촉 자용)'도 함께 통지 ②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	---

나. 지자체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 확인 후	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②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3-2" 요건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역학조사서 -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확인: (심평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③ 수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①, ②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최종접촉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
수동감시 기간 중	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검사를 전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 하며,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 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능동감시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

○ 확진자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지침에 따라 능동감시 중인 사람은, 이 지침 시행일(7.5)을 기준으로 수동감시로
전환 가능

- 수동감시 전환 후 (최종접촉일 기준 6~7일차 검사 이외의) 남아있는 검사 면제

□ 해외입국 사례

가. [검역단계] 해외입국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입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입국시	○ 입국시 각종 안내서 제공 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해외입국자용)'도 함께 제공(검역소)
무증상자	① 자가격리앱 설치(특별입국부스), 격리통지서 수령(출입국심사대) 후 실거주지 이동
유증상자	① 검역소에서 검사 실시 ② 음성인 경우 실거주지로 이동 안내

나. [지자체단계] 업무담당자 처리 사항	
입국후 1일내	<p>①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입국자 명단 확인 및 유선 연락 * 해외입국자가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알려올 경우</p> <p>②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접종완료일 확인) - 검역소 발급 격리통지서(출국일자 확인)</p> <p>③ 수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4-2" 요건 확인) - 무증상 여부 재확인(*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의 입국 여부 확인 : (질병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 입국일 당일 기준으로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가 아닌 경우에만 수동감시 전환 가능</p> <p>④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통지* 또는 교부 (②, ③ 요건 충족시 문자, 이메일 가능) * 입국일 기준 6~7일차 검사 안내 포함</p> <p>⑤ 자가격리앱 삭제</p>
수동감시 기간 중	<p>① 6~7일차 PCR검사 사전 고지, 검사 실시, 결과 확인 및 통지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검사를 전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p> <p>②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①, ②'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유지</p> <p>③ 수동감시 해제 고지: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p>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능동감시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

- 해외입국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지침에 따라 능동감시 중인 사람은, 이 지침 시행일(7.5)을 기준으로 수동감시로 전환 가능
 - 수동감시 전환 후 (입국 6~7일차 검사 이외의) 남아있는 검사 면제
- 적용시점: 지침 시행일(7.5) 입국자 부터 적용

붙임 4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1. 전자증명서(COO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발급: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2. 종이증명서를 통한 확인


* 발급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nip.kdca.go.kr), 정부24 (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7.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Si/Gun/Gu, The head of () medical institution

:210ex×297m[복합지 80g/㎡(지활용종)]

3. 예방접종스티커

- * 발급: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증빙정보가 담긴 스티커 출력→ 신분증에 부착(7.1~)

<신분증 뒷면에 부착된 스티커 시안>

1차접종 21.00.00	제0000000000000000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접종완료 21.00.00	제0000000000000000호 홍길동	질병관리청

붙임 5 자주 묻는 질문

Q1. 예방접종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는지?

○ 2차 예방접종완료일: 5.1일, 2주째: 5.15일, 지침 적용일: 5.16일 0시부터

Q2-1. 1차 접종자인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2-2.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습니다.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 경과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공통)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니므로 본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님. 예방접종미완료자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평균 2주 소요된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 항체 형성 이전 확진자 밀접접촉이나 해외출국 시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

Q3.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 자가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유지 조건으로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밀접접촉 시점과 수동감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최초접촉일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인 상태를 의미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간 수동감시

Q4. 지침 "3-2.수동감시 실시"(2쪽)의 밀접접촉자 수동감시 전환 조건 중 "④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아닐 것(변이바이러스 확인 후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 수동감시 유지 여부 판단 당시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로 전환**
- 수동감시 유지 여부 판단 당시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경우 → **수동감시**
- 수동감시 유지 여부 판단 당시 접촉한 확진자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알 수 없는 경우** → **수동감시**. 단, 수동감시 기간 중에 선행 확진자의 **변이바이러스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Q5. 지침 "3-2. 수동감시 실시"(2쪽) 중 수동감시 유지 조건 ②~④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②, ③ 확인절차 및 방법

- (1단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접속(<https://covid19.kdca.go.kr>)
- (2단계)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접촉자관리 > 해당접촉자 선택 > 상세보기 클릭 > 접촉자의 선행확진자명 확인
- (3단계)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선행확진자명 조회 > 선택 후 상세보기 > '3. 추정 감염경로' 란에 입력된 자료를 통해 선행확진자의 해외방문력(3.1), 선행 확진자의 확진자 접촉력(3.2) 정보 확인 가능

※ 해당 지자체 거주자가 아닐 경우 정보조회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 협조요청 필요

○ ④ 확인절차 및 방법

- (1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ttp://ef.hira.or.kr>) 접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 (2단계) 확진환자 관리대장 > 변이바이러스 분석 > 분석결과(변이여부) 확인
- ※ 접촉한 확진자가 해당 지자체 거주자일 경우, 관내 해당 정보 확인
 접촉한 확진자가 해당 지자체 이 외 거주자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보 확인 요청

☞ 심평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권한 신청 및 이용 안내
 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 ☎ 043-719-9132, 9131

Q6.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주민센터에서 출력한 스티커***를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7.1~)

***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접종증빙정보가 담긴 스티커 출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중 택 1)에 부착(7.1~)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이력 확인 등 관련 추가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1339, 043-719-8372, 8375

Q7.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인데

- ① 해외입국 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할 때
 - ②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6~7일차 검사를 위해 관할 보건소에 갈 때
 - ③ 확진자 밀접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수동감시 중 증상발생으로 관할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
-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나요?

- (①)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마스크 착용, 가능한 자차 이용,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 (②)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가능한 자차를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 (③)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리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해야 하며,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또는 보건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 ☞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해야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 시행

Q8.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입니다. 본 지침(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의 적용을 받아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 적용. 다만,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
- ☞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인정 합의 국가 등 관련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 1339, 043-719-9212, 9215, 9206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관련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 (☎ 044-202-1806)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2, 9215, 920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을 참조

Q9-1. 접종국가가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국내 1회, 국외 1회)도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Q9-2. 주한미군부대·대한민국 주재 외국대사관 한국국적 접종완료자입니다.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A9-1) 국내 접종력이 1회 이상인 경우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에 1차·2차 모두 포함하여

발급되므로, 현행 지침 적용 가능합니다.

- (A9-2)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에 1차·2차 모두 포함하여 발급되면 현행 지침 적용 가능합니다.

Q10-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기내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가요?
Q10-2.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지역사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가요?

- (A10-1) '확진자 밀접접촉의 수동감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자가격리 면제 불가
- (A10-2) '해외입국자의 수동감시 전환 조건'과 '확진자 밀접접촉의 수동감시 유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자가격리 면제 가능

Q1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자가격리가 면제되어 수동감시 중인 자는 수동감시 기간에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출국 사실을 알린 후 출국 가능. 단, 수동감시 기간 동안 수동감시 생활수칙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 본인 건강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하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함